

문서번호	생활보장과-1929
등록일자	2026. 1. 19.
결재일자	2026. 1. 19.
공개여부	비공개(5)

주무관	기초생활팀장	생활보장과장	주민복지국장		
김미선	오진숙	곽광준	전결 2026. 1. 19. 조인주		
협조					

살고싶은 도시  살기좋은 양천

2026년 저소득구민 부가급여 지원계획

2026. 1.

주 민 복 지 국
[생활보장과]

2026년 저소득구민 부가급여 지원 계획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저소득구민의 최저생활 수준 충족을 위해 법정급여 외 교육 관련 경비, 명절위문금 및 월동대책비를 추가 지원하여 저소득구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I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
-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조
- 2026년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 계획(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1247)

II 추진개요

- 지원대상 :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서울형기초 보장 가구
- 지원내용

구 분	지원대상	지급내용	지원기준(원)	소요예산(원)
교육경비	기초 생계·의료 수급 가구의 중·고등 재학생	교통비 (3·6·9·12월)	108,000 (분기당)	220,320,000 (시비100)
명절위문금 I	기초 생계·의료 수급 가구	명절위문금 (설·추석)	40,000 (설·추석)	920,000,000 (시비75:구비25)
명절위문금 II	차상위 및 서울형기초 수급 가구			184,000,000 (구비100)
월동대책비	기초 생계·의료 수급 가구 및 저소득 보훈대상	월동대책비	50,000 (연1회)	575,000,000 (시비100)

- 소요예산 : 1,899,320천원

III

2025년 추진실적

구 분	지급기준일	지급일	지원액(원)	지출액(원)
중·고등학생 교통비	3/3(1분기)	3/20	108,000	206,244,000
	6/1(2분기)	6/19	108,000	
	9/1(3분기)	9/18	108,000	
	12/1(4분기)	12/16	108,000	
명절위문금 I	1/21(설날)	2/4	40,000	613,410,000
	9/1(추석)	9/18	40,000	
명절위문금 II	1/21(설날)	2/4	40,000	145,760,000
	9/1(추석)	9/18	40,000	
월동대책비	11/1	11/20	50,000	538,050,000

□ 지원금액 : 총 1,503,464천원

IV

세부 추진계획

1. 교육경비(교통비)지원

□ 지원대상 : 기초 생계·의료급여수급자 가구의 중·고등학생 (시설수급자 제외)

□ 지원금액 : 1인당 연 432,000원(시비100)

※ 교통비 산출내역 : 900원 × 일2회 × 월20일 × 12개월 = 432,000원

□ 지원시기 및 기준 : 연 4회, 분기별 지급(3월, 6월, 9월, 12월)

계	1분기 (3.1.~5.31.)	2분기 (6.1.~8.31.)	3분기 (9.1.~11.30.)	4분기 (12.1.~익년2.28.)
432,000원	108,000원 (36,000원×3개월)	108,000원 (36,000원×3개월)	108,000원 (36,000원×3개월)	108,000원 (36,000원×3개월)

□ 지급방법 : 재학 여부 확인 후 가구 대표 계좌에 입금

2. 명절위문품비 I 지원

□ 지원대상 :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입양아동대상, 시설수급자 제외)

□ 지원금액 : 가구당 연 80천원(시비75:구비25)

☐ 지원시기 및 기준 : 연 2회(설날·추석 각 40천원)

구 분	지급기준일	지급일	추가지급 기준일
설날(2/17)	1/21	2/4	2/17
추석(9/25)	9/1	9/18	9/25

○ 설날 : 지급일 2/4 (지급기준일 1/21 이후 2/17까지 선정된 가구 추가 지급)

○ 추석 : 지급일 9/18 (지급기준일 9/1 이후 9/25까지 선정된 가구 추가 지급)

☐ 지급방법 : 해당 지급 일에 가구 대표 계좌에 입금

3. 명절위문품비 II 지원

☐ 지원대상 : 차상위(자활 본인부담경감·장애인) 및 서울형기초보장 가구

☐ 지원금액 : 가구당 연 80천원(구비100)

☐ 지원시기 및 기준 : 연 2회(설날·추석 각 40천원)

구 분	지급기준일	지급일	추가지급 기준일
설날(2/17)	1/21	2/4	2/17
추석(9/25)	9/1	9/18	9/25

○ 설날 : 지급일 2/4 (지급기준일 1/21 이후 2/17까지 선정된 가구 추가 지급)

○ 추석 : 지급일 9/18 (지급기준일 9/1 이후 9/25까지 선정된 가구 추가 지급)

☐ 지급방법 : 해당 지급 일에 가구 대표 계좌에 입금

4. 월동대책비 지원

☐ 지원대상 :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및 저소득 보훈대상자 가구
(입양대상아동 및 시설수급자 제외)

※ 저소득 보훈대상자 중 서울지방보훈청장 추천·통보자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일 경우 중복지원 불가)

☐ 지원금액 : 가구당 연 50천원(시비100)

☐ 지원시기 및 기준

구 분	지급기준일	지급일	추가지급 기준일
월동대책비(11월)	11/1	11/20	11/20

※ 지급기준일 11/1 이후 11/20까지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추가 지급

☐ 지급방법 : 해당 지급 일에 가구 대표 계좌에 입금

V

향후 계획

☐

추진일정

(단위:천원)

구분	지원액	예산	2026년 추진일정												
			시기	1/4			2/4			3/4			4/4		
교육경비	108	220,320	분기당												
명절위문금 I	40	920,000	설·추석												
명절위문금 II	40	180,000	설·추석												
월동대책비	50	570,000	동절기												

VI

행정사항

- ☐ 누락중복 또는 부정 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대상자 선정·관리 철저
- ☐ 중.고등학교 재학 여부 확인 철저

☐ 저소득 보훈대상자와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지원되는 월동대책비의 경우 동일가구에 이중(중복)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 확인
- ☐ 급여 지급기준일 이후 지원일까지 대상자의 변동 사항을 확인하여 반영 처리
- ☐ 단독 가구 사망자는 지급 제외

☐ 자치구 간 전출·입의 경우 급여 지급기준일 기준 해당 자치구에서 지원

붙임 2026년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계획(서울시) 1부. 끝.